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6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6. 15

다. 상 정 일 자 : 2005. 7. 4

2. 제안설명

가. 제안설명 : 의회운영위원회 주송현 의원

나.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정례회의 연간 회기 일수 조문은 삭제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제3조(회기)는 삭제(안 제3조)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서 12월 1일로(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문찬주)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이 삭제되어 제3조의 회기일수를 연간 35일 이내 조문은 삭제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서 “매년 12월 1일”로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 의결.”

7. 붙 임 :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회기) 삭제

제4조(집회)중 “12월 5일”을 “12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의결”

7. 붙임 :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